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정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073 발의연월일: 2025. 4. 23.

발 의 자:이정문・손명수・이연희

이학영 • 이인영 • 홍기원

이광희 • 박수현 • 김원이

김남근 · 임광현 · 문금주

한민수 · 김현정 의원

(1491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난 2023년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었지만, 여전히 국가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체계와 국가보훈정책에 대해 미흡한 점을 보 이고 있음.

또한, 19개의 정부 부처 중 유일하게 소관 분야 연구·개발원이 부재하여 국가보훈부의 정책적 연구역량이 부족한 상태임.

이에 국가보훈부가 충분한 수준의 정책적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'국가보훈정책개발원'을 설립도록 하여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제대로 예우하기 위한 보훈 정책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1까지 신설 등).

_	2	_

법률 제 호

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보훈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5조의2(국가보훈정책개발원의 설립) ① 보훈정책의 발굴과 보훈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조사, 정책연구·개발 및 교육을 수행하고 관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정책개발원(이하 "개발원"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
 - ② 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.
 - ③ 개발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.
 - ④ 개발원은 연구 및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.
 - ⑤ 개발원의 장(이하 "원장"이라 한다)은 개발원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개발원의 설립목적 및 업무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⑥ 정부는 개발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
 - ⑦ 국가는 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「국유재

산법」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.

- ⑧ 이 법에 따른 개발원이 아닌 자는 국가보훈정책개발원 또는 이 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- ⑨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에 개발원의 설립·운영 등에 필 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- 제15조의3(국가보훈정책개발원의 정관) ① 개발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목적
 - 2. 명칭
 - 3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 - 4.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
 - 5.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
 - 6.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
 - 7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 - 8. 원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
 - 9.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
 - ② 개발원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.
- 제15조의4(국가보훈정책개발원의 업무)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, 복지, 예우 등 보훈정책의 조사 연

구 및 개발

- 2.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조사·연구·교육 및 관련 콘텐츠 개발· 보급
- 3. 보훈 관련 국제 교류ㆍ협력 정책의 조사ㆍ연구 및 개발
- 4. 국내외 연구기관, 국제기구, 민간단체와의 교류 및 연구협력
- 5. 정부, 국내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의 연구용역 수탁
- 6. 국가보훈에 관한 정책정보 및 통계의 생산 · 분석
- 7. 보훈정보화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· 연계 지원
- 8. 조사 연구결과의 출판 및 홍보
- 9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 및 개발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
- 제15조의5(국가보훈정책개발원의 임원) ① 개발원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.
 - 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,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 - ③ 제1항의 임원 중 상근 임원은 2명 이내로 한다.
 - ④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의 임명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 - ⑤ 감사는 국가보훈정책개발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.

- 제15조의6(국가보훈정책개발원의 원장) ① 원장은 국가보훈정책개발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그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 - ② 원장은 이사로서 개발원을 대표하고, 그 경영에 책임을 진다
 - ③ 원장은 정관에 따라 공개모집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임명한다.
 - ④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개발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-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임할 수 있다.
 - 1. 신체상·정신상의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
 - 2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
 - 3. 법령 또는 개발원 정관을 위반하여 개발원에 손해를 입힌 경우
 - 4.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질이 현 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제15조의7(국가보훈정책개발원의 평가 등) ① 개발원은 연구 실적과 경영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.
 - ② 개발원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

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- 제15조의8(회계원칙과 외부감사) ① 개발원의 회계에는 정부가 정하는 회계원칙에 따라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가 명백히 표시되어야 한다.
 - ② 개발원은 사업연도마다 국가보훈부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(회계법인을 포함한다)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,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한다.
- 제15조의9(정치적 중립) ① 개발원은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, 특히 그 사업을 수행할 때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.
 - ② 개발원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1.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
 - 2.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도록 하는 행위
 - 3.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
 - 4. 그 밖에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행위
- 제15조의10(비밀 유지의 의무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1. 개발원 임원·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
 - 2. 제15조의8에 따른 공인회계사

- 3. 개발원의 위탁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
- 제15조의11(국가보훈정책개발원의 준용 규정) 개발원에 대하여 이 법과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- 제31조 및 제3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31조(벌칙) 제15조의10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
- 제32조(과대료) ① 제15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국가보훈정책개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대료를 부과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부과·징수한다.

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개발원의 설립준비)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개발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훈정 책개발원 설립준비위원회(이하"설립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한다.
 - ② 설립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과 위원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- ③ 설립위원회는 개발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- ④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연명으로 개발 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보훈정책개발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.
- ⑤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 및 해촉된 것으로 본다.
- ⑥ 설립 당시의 보훈정책개발원장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임명한다.
- ⑦ 개발원의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.
- 제3조(권리·의무의 승계)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개발원은 이 법 시행 당시 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」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 단의 권리·의무 및 재산 중 보훈교육연구원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 으로 승계한다.
 - ② 개발원의 설립 이전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행한 행위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(보훈교육연구원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)는 개발원이 행한 행위 또는 개발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.
- 제4조(설립 당시의 예산)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개발원은 설립 당시 개발원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국가보훈부 소관 예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되는 경비는 개발원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

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.

제5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9조제2항 중 "공단"을 "국가보훈정책개발원"으로 한다.

②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조제6호를 삭제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15조의2(국가보훈정책개발원의
	설립) ① 보훈정책의 발굴과
	보훈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조
	사, 정책연구·개발 및 교육을
	수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
	기 위하여 국가보훈정책개발원
	(이하 "개발원"이라 한다)을 설
	<u>립한다.</u>
	② 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.
	③ 개발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
	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
	써 성립된다.
	④ 개발원은 연구 및 경영에서
	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.
	⑤ 개발원의 장(이하 "원장"이
	라 한다)은 개발원의 경영혁신
	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
	야 한다. 이 경우 개발원의 설
	립목적 및 업무특성 등을 충분
	히 고려하여 안정적 연구환경
	조성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
	<u> 여야 한다.</u>
	⑥ 정부는 개발원의 운영 등에
	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

<u>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</u> <u>다.</u>

- ⑦ 국가는 개발원의 설립 및

 운영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

 「국유재산법」에도 불구하고

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할

 수 있다.
- 8 이 법에 따른 개발원이 아 닌 자는 국가보훈정책개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 하지 못한다.
- ⑨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와그 밖에 개발원의 설립・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정한다.

제15조의3(국가보훈정책개발원의 정관) ① 개발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.

- 1. 목적
- <u>2. 명칭</u>
- 3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- 4.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 항
- 5.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6.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

<신 설>

<신 설>

- 7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 8. 원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
 9.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
 ② 개발원의 정관을 변경하는
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의 승인을
 받아야한다.
- 제15조의4(국가보훈정책개발원의 업무)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 상, 복지, 예우 등 보훈정책 의 조사·연구 및 개발
 - 2.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조사

 •연구•교육 및 관련 콘텐

 츠 개발•보급
 - 3. 보훈 관련 국제 교류·협력 정책의 조사·연구 및 개발
 - 4. 국내외 연구기관, 국제기구,민간단체와의 교류 및 연구협력
 - 5. 정부, 국내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의 연구용역 수탁
 - 6. 국가보훈에 관한 정책정보 및 통계의 생산·분석
 - 7. 보훈정보화 촉진을 위한 정 책개발 및 정보시스템의 구

축・운영・연계 지원 8. 조사 · 연구결과의 출판 및 홍보 9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 지의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 및 개발원의 설립목적을 달 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<신 설> 제15조의5(국가보훈정책개발원의 임원) ① 개발원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 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. 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 고,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 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③ 제1항의 임원 중 상근 임원 은 2명 이내로 한다. ④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 의 임명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⑤ 감사는 국가보훈정책개발원 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. <신 설> 제15조의6(국가보훈정책개발원의 원장) ① 원장은 국가보훈정책 개발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

괄하며 그 소속 직원을 지휘·

감독한다.

- ② 원장은 이사로서 개발원을 대표하고, 그 경영에 책임을 진다
- ③ 원장은 정관에 따라 공개모 집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임명 한다.
- ④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개발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해임할 수 있다.
- 1. 신체상・정신상의 질환으로

 장기간 직무를 감당하지 못

 하게 된 경우
- 2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제

 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

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
- 3. 법령 또는 개발원 정관을

 위반하여 개발원에 손해를

 입힌 경우
- 4.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

판단되는 경우 <신 설> 제15조의7(국가보훈정책개발원의 평가 등) ① 개발원은 연구 실 적과 경영 내용을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. ② 개발원은 제1항에 따른 평 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제15조의8(회계원칙과 외부감사) <신 설> ① 개발원의 회계에는 정부가 정하는 회계원칙에 따라 경영 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가 명백히 표시되어야 한 다. ② 개발원은 사업연도마다 국 가보훈부가 지정하는 공인회계 사(회계법인을 포함한다)의 회 계감사를 받아야 하며, 그 결 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제15조의9(정치적 중립) ① 개발

<신 설>

원은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, 특히 그 사업을 수행할 때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.

- ② 개발원은 공직선거에 있어 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.
- 1.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
- 2.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도록 하는 행위
- 3.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아 니하도록 하는 행위
- 4. 그 밖에 정치적 중립을 해 치는 행위

제15조의10(비밀 유지의 의무)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
당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
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
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1. 개발원 임원·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
- 2. 제15조의8에 따른 공인회계<u>사</u>
- 3. 개발원의 위탁을 받아 그

	업무를 수행하는 자
<u><신 설></u>	제15조의11(국가보훈정책개발원
	의 준용 규정) 개발원에 대하
	여 이 법과 「공공기관의 운영
	에 관한 법률」에서 규정한 사
	<u>항을</u>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
	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
	<u>한다.</u>
<u><신 설></u>	제31조(벌칙) 제15조의10를 위반
	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
	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
<u><신 설></u>	제32조(과태료) ① 제15조의2제8
	항을 위반하여 국가보훈정책개
	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
	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
	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	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
	<u>가보훈부장관이 부과·징수한</u>
	<u>다.</u>